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20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6.9.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

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맞추어 정비하여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권자 선제적 발굴 책무를 신설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등에 대한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2026년 7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약 49만명에서 약 88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의 34.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1조 573억원(국비 7,084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함. 다만,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용어 체계에 맞게 표현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청 간주 제도의 경우, 장애인연금이 신청주의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이 제도 인지 부족이나 신청 역량의 한계 등으로 제도 이용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신청의 경우 수급요건에 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점과 신청 간주 시점 사이에 소득·재산, 가구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부칙의 적용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경우 제8조제2

항제3호의 개정규정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 시행 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